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안은 2005년 8월 31일 종로구청장
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 년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여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 재원에 대한 내용 (안 제2조)
 -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의 교부금 또는 출연금 등
- 나. 기금의 용도 (안 제3조)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
- 다. 기금의 운용·관리 (안 제4조)
 - 기금은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하고
 - 구 금고에의 예치 및 유가증권 매입 등을 통한 기금의 증식
- 라. 기금의 운용심의 (안 제5조)
 - 기금의 조성, 운용계획 및 결산 등은 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
- 마. 지원대상 (안 제6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 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에게 기금을 지원

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조건 (안 제8조)

-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원금액 결정
- 기금의 상환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일시상환
- 이자는 연 3퍼센트, 연체이자율은 연 15퍼센트 적용

사.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기금운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 (안 제10조)

III. 검토 의견

1. 제정경위 및 필요성

-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민민, 실업자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기초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과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1999년 9월 7일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법률 제6024호)되었고, 2000년 7월 27일 동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16924호)되어 동 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바 있습니다.
- 이에따라 위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0년 10월 1일 “중로구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틈새계층 특별구호취로사업 및 기초생활수급대상 결정 등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과 자활급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 생활보장위원회구성 및 운영 현황 (2005. 9월 현재)

설 치 연월일	주 요 심 의 내 용	위원수 (임기)	구 성	개최실적
2000. 10. 1	· 생활보장사업 기본계획수립 ·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보장기금의 운용·관리	12인 (2년)	구청장(위원장), 구의원 1, 공무원 1, 관계전문가 9,	연 4회 (분기별1회)

- 동 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41조 내지 46조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는 법 제정당시 위 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가 많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지원신청 사례도 전무한 상태여서 구 재정여건을 감안,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기금 설치를 유보하여 왔던 것이나

-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최근 서울시와 감사원에서 조속한 시일내 기금을 조성토록 촉구(사유서 제출)하고 있고,

특히, 2005년 1월 1일 분권교부세 신설과 함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국고 보조사업 중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한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2005. 7. 1, 조례 제632호) 등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중대되어 가는 점을 감안 시, 향후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참고로 2005년 8월 말 현재 25개 자치구 중 11개 구가 2억원 내지 50억원 규모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중에 있으며(별첨 참조), 우리 구의 경우 2004년도에 서울시 재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업자금(1건 900만원)을 처음 융자지원한 사례가 있음에 따라 앞으로 지원신청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관계법령

- 본 제정조례안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등 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안정적 사업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의 조성 및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156조 및 개별 상위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의 저촉이 없는 범위내에서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있으며, 주요내용은

-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외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 기금의 여유자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3. 주요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총 13개조의 본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문의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안내지침”과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 중 기초생활보장계정자금의 지원에 관한 규정(제8조 내지 제13조)에 기초한 것으로

○ 조항별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 **안 제2조** 기금의 구성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하면,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적립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법 취지에 맞게 조성목표액과 조성기간을 정하여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기금 조성재원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열거된 내용과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 제8조제6호 규정에 의거 자치구에 대한 기금지원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 **안 제3조** 기금의 용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3조 규정내용을, **안 제6조**의 지원대상은 **안 제3조** 각호의 용도에 부합되는 수혜대상자를 열거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 **안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조성된 기금은 “반드시 금고를 지정”하여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 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이나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유가증권 등에의 투자는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여유자금의 경우 수익성을 고려하여 CD등 저축성 예금이나 국·공채 투자 등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 이율이 높은 고수익 금융상품에 예치(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78, 80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고(제16조),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도 지역발전협력기금을 설치하여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제17조) 하고 있습니다.

- **안 제5조제2호** 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기금은 일정 목표액까지 기금을 조성한 후 집행하는 기금과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여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기금이 있는 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자활공동체 사업지원 및 수급자 생업자금지원 등 사업이 이미 시행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금을 적립해 가면서 그 일부는 사업수행 재원으로 사용이 불가피 할 것이므로,

향후 안정적인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목표액에 도달할 때 까지 기금의 일정비율을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한편,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하여 목표한 기금이 조속히 적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 제7조제2항**의 “자금의 용도 변경”, **안 제8조제1항 및 5항**의 “사업자금 대여범위”, **안 제9조제2항**의 “이차보전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안 제5조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며,
- 기타 **안 제8조** 및 **안 제9조**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한도액(7천만원), 대여이자, 상환조건 및 이차보전에 관한 규정내용은 현행 서울시의 용자지원 수준에 맞춘 것으로(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 제10조, 제12조)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시 및 자치구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최근 구성한 “구 사회복지협의체”에 통합하는 방안 등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중복이 없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IV.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第133條 (財産 및 基金의 設置) ①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또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財産을 保有하거나, 特정한 資金의 運用을 위한 基金을 設치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財産의 保有, 基金의 設置·運用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定한다.

○ 지방재정법

第64條 (金庫의 設置)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金融機關으로 하여금 소관 現金과 그의 所有 또는 보관에 속하는 有價證券의 出納 및 보관 기타의 金庫業務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金庫를 指定하여야 한다.

第110條 (基金의 運用등) ①地方自治法 第13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하는 基金은 條例로 定하는 特정한 目的을 위하여 積省하고 효율적으로 運用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사업의 支援을 目的으로 하는 基金의 경우에는 그 基金의 造成을 위하여 地方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會計年度마다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야 하며, 出納閉鎖後 80日 이내에 基金의 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計劃書와 基金決算報告書를 每 會計年度마다 각각 歲入·歲出豫算案 또는 決算書와 함께 地方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가 定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의 관리와 운용에 關한 事務의 일부를 소속公務員에게 위임하거나 地方自治團體외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委託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者の 책임에 관하여는 第115條 및 會計關係職員등의責任에 관한法律을 準用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③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고, 그외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기금운용제도)

- 기금별 지출시기 등을 고려, 금리가 높은 금고은행에 예치(78쪽)
- 기금의 여유자금은 정기예금, CD등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수 있으나,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 상품에는 여유자금을 신탁할 수 없음(80쪽)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2006. 1. 1. 시행)

제3조(기금의 설치제한) ①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신설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기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발전협력기금의 설치·운용) ①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지역발전협력기금(이하 "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자활공동체) ①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공동체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③보장기관은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44조 (보장기금의 적립) ①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9조 (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육·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 제1호 가목

미취학 자녀 또는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자(가구별로 1인에 한하되, 양육·간병 또는 보호를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보육·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2조 (자활사업의 위탁시행) ①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자활사업을 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수용능력 등에 관하여 미리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제1항각호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 등의 제공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
4.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제시하는 사업장예의 취업
5.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로사업 등
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의 사업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의 사업
8. 개인 또는 공동 창업
9. 근로의욕 및 능력의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10. 기타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28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①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 (이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②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제37조 (지역자활지원계획)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해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1조 (보장기금의 설치)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제42조 (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공공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제4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

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제44조 (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기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 (지원대상 자활공동체)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는 그 구성원중 수급자가 3분의 1이상인 자활공동체로 한다.

②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던 자활공동체가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자활공동체의 존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성원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인 자활공동체에 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행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

제8조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6. 서울특별시 자치구

제10조 (대출 및 상환) ①조례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금액은 공동체당 7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출금의 대출 및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출이율 : 연 3퍼센트. 다만, 제2호의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율을 적용

2. 상환조건 :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

제12조 (이차보전) ①조례 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은 자활 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자금의 대출이율에서 제10조 제2항의 대출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 안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현황

※ 25개구 중 11개구가 기금 설치

(2005. 8월말 현재)

자치구명	기금설치 년 도	조성기한	목 표 액	조 성 액 (천 원)	비 고
종 로 구					05.9월에정
중 구					
용 산 구					2005년중 설치
성 동 구					유사기금설치
광 진 구	2004년	-	-	-	조례만 제정
동대문구					
중 랑 구					2005년중 설치
성 북 구					2005년중 설치
강 북 구					2005년중 설치
도 봉 구					2005년중 설치
노 원 구	2001년	-	10억원	1,137,000	
은 평 구	2004년	2009년까지	10억원	244,371	
서대문구	2004년	2010년까지	10억원	(200,000)	
마 포 구	2003년	2008년까지	10억원	426,418	
양 천 구	2004년	-	10억원	(218,185)	
강 서 구	2003년	2011년까지	50억원	1,428,554	
구 로 구	2000년	-	-	581,858	2,470천 원 집행
금 천 구	2002년	2007년까지	6억원	465,099	
영등포구	2004년	2009년까지	10억원	400,000	
동 작 구	2005년	2009년까지	2억원	(50,000)	
관 악 구					진행 중
서 초 구					
강 남 구	2003년	2010년	50억원	(60,000)	
송 파 구					
강 동 구					2005년중 설치

※ ()는 2005년 적립 예정액 임